

■ 노조법 개정 이후 전국에서 첫 번째로 현대제철 하청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국회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가결한 바로 다음 날(8/25)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이하 ‘지회’)는 국회 앞에서 투쟁계획과 요구를 우리 사회에 알렸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재벌자본과 그 나팔수들은 ‘365일 교섭’ ‘자본철수’ 운운하며, 정부에는 엄살을, 노동계에는 협박을 동시에 갈겨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회의 요구가 지극히 정당하고 상식이라는 근거는 노조법 개정 이전에도 넘쳤습니다. 지회는 현 국면을 발판삼아 10년 넘게 쌓여온 현장의 노사관계 모순을 하나씩 해결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국회는 현대제철을 국정감사에 세워라

■ 먼저 지회는 올해 10월에 시작하는 국정감사에 현대제철 원하청 문제를 의제로 채택하고 서강현 대표이사를 국정감사장에 앉혀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유성기업, 갑오오토텍 노조파괴 이후 현대제철은 노동자 죽이기의 새로운 선두주자로 나섰습니다. 현대제철은 오랫동안, 다양하게, 잔혹한 방식으로 하청노동자를 괴롭혔고, 모든 수단을 악용한 노동탄압 백화점입니다. 국정감사의 집중조명을 받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현대제철 원하청 문제의 진실을 국감장에서 드러내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국회가 노조법 개정을 통과한 만큼, 국정감사를 통해 원하청 관계의 갈등과 모순이 압축된 현대제철에서 벌어진 사건들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검찰은 현대제철 불법행위 신속 처벌하라

■ 지회는 투쟁선포 이틀 뒤(8/27) 조합원 1,892명의 집단고소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습니다. 고소내용은 노조법 개정과 상관없이 개정 이전에 발생한 현대제철의 명백한 범죄인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 (파견법 위반)입니다.

법원과 노동부 명령에도 현대제철의 불법행위는 계속

되고, 현대제철 사용주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부실수사와 늦장수사, 그리고 재벌에게 면죄부를 주는 검찰의 태도가 원인입니다. 검찰은 신속히 현대제철의 범죄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현대제철 사용주를 재판장에 세워야 합니다. 검찰이 할 일은 범죄행위를 처벌을 통해 바로 잡고, 같은 범죄가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노동부는 현대제철 원하청 교섭 촉진하라

■ 지회는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노조법 2조 개정후 현대제철을 “원하청 교섭 1호 현장”으로 삼을 것, 둘째, 현대제철의 불법행위와 이로 인한 하청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노동부의 역할중 ‘교섭 촉진’은 노조와 사용자 간의 단체교섭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돕는 활동입니다. 노동부가 현대제철 원하청 교섭 성사를 첫 번째 모델로 삼아, 노조법 개정 취지에 맞게 다른 사업장에도 모범 사례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진짜 사장 현대제철은 교섭장에 나오라

■ 지회는 국회와 검찰, 노동부를 넘어, 끝으로 현대제철 원청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상대이며, 궁극적 투쟁목표입니다.

일찍이 법원, 노동위원회, 노동부는 현대제철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사용자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노동부의 명령과 법원의 판결에도 하청노동자의 직접고용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덩치만 키운 하청업체에 불과한 ‘자회사’를 설립하여 하청노동자에게 ‘소송취하’와 ‘부제소동의서’를 거래조건으로 불법파견 범죄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지회의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 200억 손해배상 청구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지회의 최소한 요구인 산업안전보건 의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동안 2021년부터 당진에서만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 불법파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고, 사람 죽이는 손배청구를 철회하며,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일터를 위해 현대제철은 하청노동자와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현대제철 대표이사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음을 빨리 깨우치길 바랍니다. 🐼